

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0102-10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안내문

- 본 책자는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작하였음
 - 성매개감염병 감시, 진단·신고 기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치료·지원, 교육홍보, 실험실 진단·진단시약 등에 대한 기본 지식과 행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
- 본 지침에 대한 오류 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과로 연락 요망
- 관련 부서 연락처

부 서	업 무	연락처(043-719)
에이즈관리과	• 성매개감염병 관리 총괄 • 성매개감염병 사업관리 • 신고 및 현황 분석 • 민간지원·교육홍보	7323 7917
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감시연보 발행(성매개감염병 발생보고 분석·환류)	7118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진단검사 관련 제도 및 지침 관리	7843
세균분석과/바이러스분석과	• 실험실 진단검사 운영	8115/8195

목 차

I. 성매개감염병 관리 개요

1. 목적	3
2. 2020년 신고현황	3
3. 추진방향	7
4. 기관별 역할	8

II. 성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

1. 목적	13
2.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13
3. 진단·신고 기준	18

III. 성매개감염병 관리

1.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25
2. 치료 지원	32
3.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36
4. 교육 및 홍보	41
5. 실적보고	42

목 차

IV. 성매개감염병 실험실 검사

1. 매독(Syphilis)	49
2. 임질(Gonorrhea)	52
3. 클라미디아감염증(Chlamydial infections)	54
4. 연성하감(Chancroid)	56
5.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58
6. 첨규콘딜롬(Condyloma acuminata)	60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62
8. 기타(트리코모나스 질염)	64
9. 검사 시 주의사항	65
10. 진단시약 및 기자재	65
11. 보건소 현지 확인 및 지도·감독	65

V. 부록

1. 관련 법령	69
2.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연혁	78
3. 성매개감염병 진료기록부(예시)	79
4. 성매개감염병 신고 서식(예시)	80
5. 성매개감염병 치료 권고 지침	81
6.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료	83
7. HIV 익명검사 가이드라인	84
8.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86
9. 관련 부서 연락처	90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개정사항												
0	<u>2021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안내문</u> <table> <tr> <td>감염병진단 관리총괄과</td><td>• 진단고사·제도, 진단검사지침</td><td>7848</td></tr> <tr> <td>세균분석과 /바이러스 분석과</td><td>• 실험실 검사 운영</td><td>8115/ 8195</td></tr> </table>	감염병진단 관리총괄과	• 진단고사·제도, 진단검사지침	7848	세균분석과 /바이러스 분석과	• 실험실 검사 운영	8115/ 8195	<u>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안내문</u> <table> <tr> <td>감염병진단 관리총괄과</td><td>• <u>진단검사 관련 제도 및 지침 관리</u></td><td><u>7843</u></td></tr> <tr> <td>세균분석과 /바이러스 분석과</td><td>• <u>실험실 진단검사 운영</u></td><td><u>8913/ 8195</u></td></tr> </table>	감염병진단 관리총괄과	• <u>진단검사 관련 제도 및 지침 관리</u>	<u>7843</u>	세균분석과 /바이러스 분석과	• <u>실험실 진단검사 운영</u>	<u>8913/ 8195</u>
감염병진단 관리총괄과	• 진단고사·제도, 진단검사지침	7848												
세균분석과 /바이러스 분석과	• 실험실 검사 운영	8115/ 8195												
감염병진단 관리총괄과	• <u>진단검사 관련 제도 및 지침 관리</u>	<u>7843</u>												
세균분석과 /바이러스 분석과	• <u>실험실 진단검사 운영</u>	<u>8913/ 8195</u>												
3	I. 성매개감염병 관리 개요 제1장 2019년 신고현황	I. 성매개감염병 관리 개요 제1장 2020년 신고현황(통계수치 업데이트)												
18	가. 매독(Syphilis)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1가2기 매독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로마 같은피부병 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에서 암시 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선천성 매독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림프절, 제 대혈)에서 암시아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가. 매독(Syphilis)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1가2기 매독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로마 같은피부병 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에서 암시아 현미경검사로 <i>T. pallidum</i> 검출 ○ 선천성 매독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림프절, 제 대혈)에서 암시아현미경검사로 <i>T. pallidum</i> 검출												
19	나. 임질(Gonorrhea) ○ 검체(남성의 요도도말)에서 세포 내 그람음성 쌍 알균 현미경 검사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결막, 혈액, 관절액)에서 <i>N. gonorrhoeae</i> 분리 동정	나. 임질(Gonorrhea) ○ 검체(남성의 요도도말)에서 세포 내 그람음성 쌍 알균 현미경 검사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결막, 혈액, 관절액)에서 <i>N. gonorrhoeae</i> 분리 동정												
71 ~ 73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13)[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2(의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제81조(발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9. 10)[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제2(의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제81조(발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구분	2021년	2022년 개정사항
	2019. 12.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0. 13][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기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 6. 4>	2019. 12. 3., <u>2021.3.9</u>)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13][보건복지부령 제823호, 2021. 8. 13, 일부개정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기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 6. 4., <u>2021.5.24</u>>
74	라.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시행 2020. 3. 24][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라.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시행 2021. 1. 1][법률 제 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0, 2021. 2. 17, 타법개정]
75	마.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시행 2020. 9. 12][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0. 11. 6][총리령 제1651호, 2020. 10. 16, 일부개정]	마.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시행 2021. 7. 27][법률 제18363호, 2021. 7. 27,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1][총리령 제1715호, 2021. 6. 30, 일부개정]
77	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0. 10. 1][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3. 16][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일부개정]
78	2021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시행 ※ 정기 건강진단 대상에 남성 포함	2021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개정·시행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의 성별 차별 법령 정비
80	<부록> 4. 성매개감염병 신고 서식(예시)	<부록> 4. 성매개감염병 신고 서식(예시) (문구추가)※ 유의사항 ○ 본 신고 대상이 아동*인 경우로서, 아동학대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면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7p, 다. 기타 참조) → 신고기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V. 부록 8, 86p 참조), 관할 경찰서 또는 112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83	6.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료	6.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료 (통계수치 업데이트)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I

성매개감염병 관리 개요

1. 목적
2. 2020년 신고현황
3. 추진방향
4. 기관별 역할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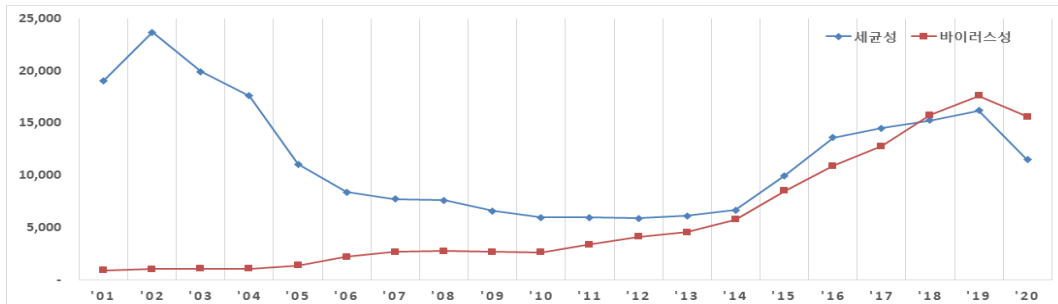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서의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2 2020년 신고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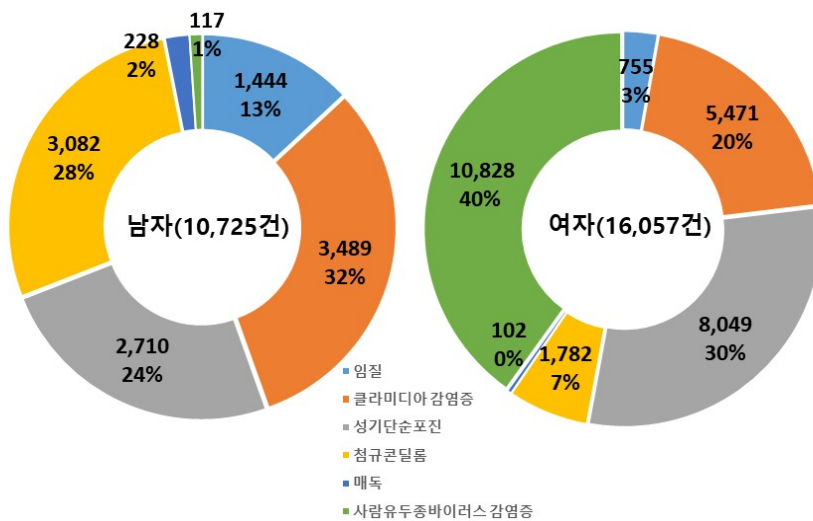
- 「2020년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은 2020년 한 해 27,112건이 보고되어 2019년(32,054건) 대비 15.5% 감소함
 - 클라미디아감염증 8,960건(전체의 33.0%), 성기단순포진 10,759건(39.6%), 첨규콘딜롬 4,864건(17.9%), 임질 2,199건(8.1%), 매독 330건(1.2%)임
 - ※ 성매개감염병은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임(2020년 기준, 매독은 2020년 표본감시대상으로 전환)
- 병원체 종별 세균성 11,489건(42.3%), 바이러스성 15,623건(57.6%)으로 바이러스성 증가 추세임
 - ※ 세균성 성매개감염병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 바이러스성 성매개감염병 :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 2020년 1월 1일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이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에 포함되나 데이터 부족으로 연도별 통계 자료에서 제외됨

1) 질병관리청, 「2020 감염병 감시연보」, 2021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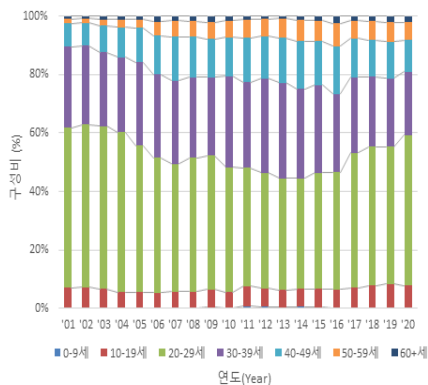
4 ■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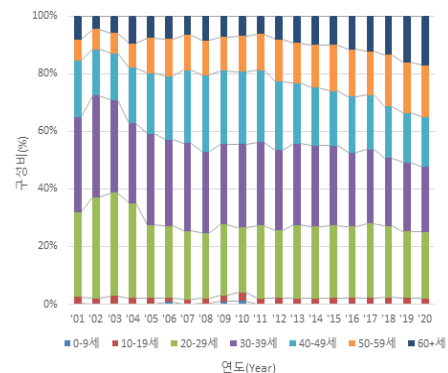
〈그림 1〉 성매개감염병 병원체 종별 신고현황 추이(2001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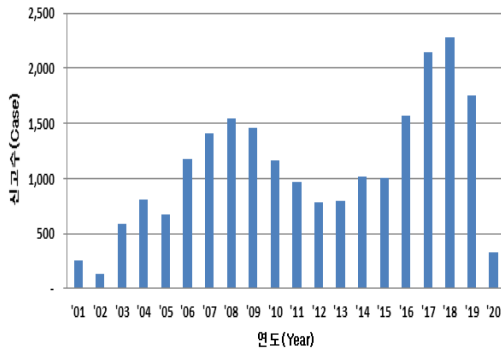
〈그림 2〉 2020년 성매개감염병 성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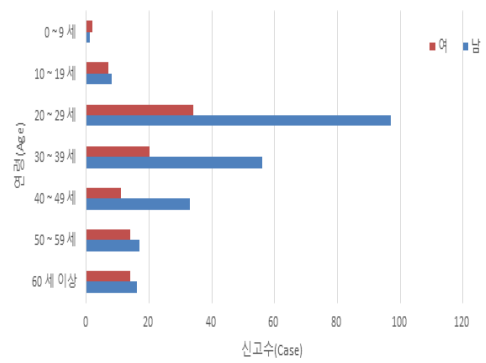
〈그림 3〉 세균성 성매개감염병 연령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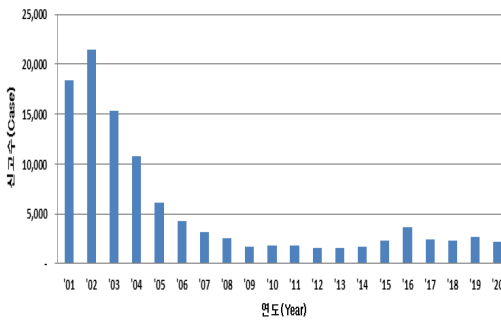
〈그림 4〉 바이러스성 성매개감염병 연령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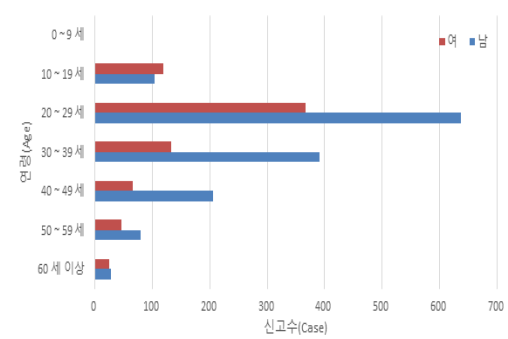
〈그림 5〉 매독 연도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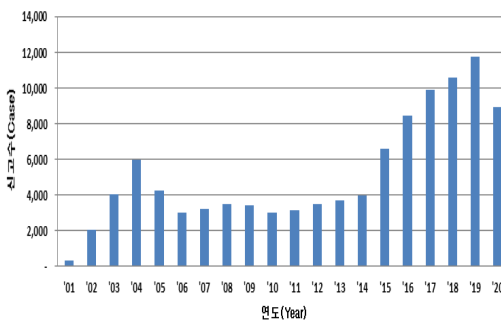
〈그림 6〉 2020년 매독 성별, 연령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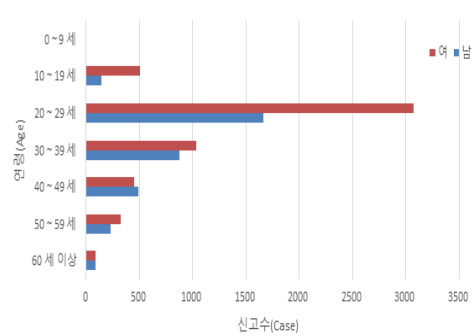
〈그림 7〉 임질 연도별 신고현황



〈그림 8〉 2020년 임질 성별 연령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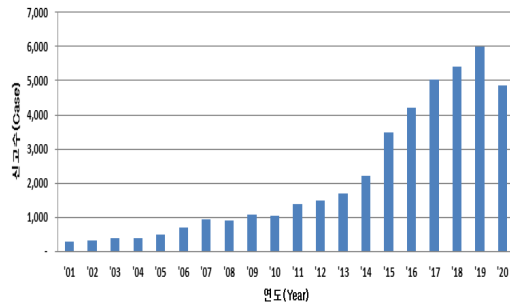


〈그림 9〉 클라미디아감염증 연도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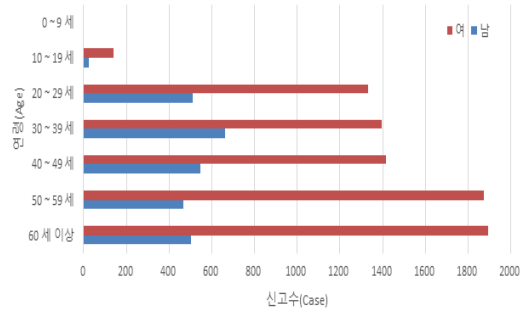


〈그림 10〉 2020년 클라미디아감염증 성별 연령별 신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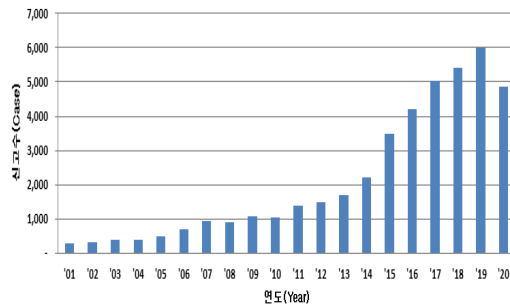
6 ■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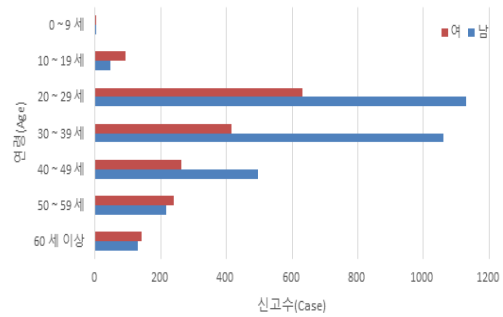
〈그림 11〉 성기단순포진 연도별 신고현황



〈그림 12〉 2020년 성기단순포진 성별, 연령별 신고현황



〈그림 13〉 침균콘딜롬 연도별 신고현황



〈그림 14〉 2020년 침균콘딜롬 성별, 연령별 신고현황

3 추진방향

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²⁾(이하 ‘건강진단대상자’) 등 고위험군 자발적 검진 및 치료 유도

- 건강진단대상자 등 고위험군 검진 및 치료
- 건강진단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발적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교육·홍보
- 보건소 등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³⁾에서 검진 및 치료

나.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대상별(건강진단대상자, 청소년, 군인, 노인 등 고위험군) 교육·홍보 실시(필요 시 검진 포함)
- 배우자(파트너) 동반 검진·치료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 콘돔 배포 등

다. 전문인력 교육 강화

- 신규 담당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실무교육 실시
- 성매개감염병 예방·검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의 교육훈련 확대

라. 성매개감염병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율 향상

- 표본감시 활동 모니터를 통한 표본감시 신고율 향상 및 감시 결과 환류
- 산부인과, 비뇨기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성매개감염병 신고 기준 및 방법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신고 기준 변경(2020.1.1.부터 시행)
 - (변경) 매독 : 3군감염병(전수감시) → 4급감염병(표본감시)
 - (신규) HPV감염증 : 4급감염병(표본감시)

2)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

3)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보건소 및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

4 기관별 역할

가. 중앙

1) 질병관리청

①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

-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성매개감염병 표본 감시
-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및 교육·홍보자료 개발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
-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등 지원
- 특수취약지역 기반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시·도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한 평가

②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감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 감염병 감시연보 발행 : 성매개감염병 발생보고 분석 및 환류

③ 감염병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바이러스분석과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실험실 검사
- 성매개감염병 진단제제의 개발
- 성매개감염병 실험실 검사에 관한 정도평가 및 담당자 훈련 교육

나. 시·도

① 보건위생(정책)과

- 시·도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도·감독
- 관할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실적 보고

②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성매개감염병(매독)에 대한 실험실 검사
- 보건소 등 전담진료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기술지도 및 확인시험 등

다. 보 건 소

-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리, 진단 및 치료
-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교육·홍보, 주기적인 지도·감독
 - 보건소 내 위생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검진자에 대한 검진의무 이행 독려
- 지역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 법정 성매개감염병의 신고·보고
- 성매개감염병 진료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의료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도·감독
- 확인시험용 검체보관 및 시험의뢰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실적 보고

라.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 건강진단대상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치료
- 건강진단관리자 및 요원에 대한 보건교육
- 특수취약지역에 대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II

성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

1. 목적
2.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3. 진단·신고 기준

1 목적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감염규모, 변동양상을 파악하고 감염 고위험군을 확인하여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사업전략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 성매개감염병 감시는 표본의료기관을 통해 환자발생을 보고받는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됨
- 또한, 고위험지역의 성매개감염병 발생 양상을 신속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부 지정, 특수 취약지역기반 감시체계를 운영 중임

가. 표본감시체계

1) 사업대상

- 대상자 : 보건소 및 표본감시기관에 내원하여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은 사람
- 대상질환 : 1기 매독, 2기 매독, 선천성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질 병 명	신고범위		
	환자 ⁴⁾	의사환자 ⁵⁾	병원체보유자 ⁶⁾
1기 매독	○	×	×
2기 매독	○	×	×
선천성 매독	○	×	×
임질	○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
연성하감	○	×	×
성기단순포진	○	○	×
첨규콘딜롬	○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	○

※ 세부사항은 「2020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에 따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람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4) 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5)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6)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2) 참여기관

- 보건소
-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원급, 병원급
※ 시·군·구 인구 10만 명당 1개소 (단,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은 보건소 지정)
- 공공병원

3) 신고·보고체계

- 표본감시기관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4) 표본감시기관

① 신고시기 : 7일 이내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한 경우 : 검사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하지 않은 경우 : <의사환자>로 임상적 진단을 한 후 7일 이내

② 신고방법

- 전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진료환자 중 성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감염병 웹보고(<http://is.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지역 보건소로 7일 이내 신고
- 표본감시기관은 신고담당자(예: 병원감염관리간호사, 의무기록사 등)를 지정하여 각 진료과(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신고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소에 신고

5) 기관별 업무

① 질병관리청

-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 시·도 보고자료 점검 및 승인
- 성매개감염병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 성매개감염병 통계 작성 및 배포

② 시·도

-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 관리
-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 보고내용 적절성 검토
 - 보고시기 : 매주 수요일까지 질병관리청으로 보고(주 1회)
 - 보고방법 : 감염병 웹보고(<http://is.kdca.go.kr>)
- 성매개감염병 자료 분석

③ 보건소

- 부서별 역할

부 서	담당자	역 할
진료실	관리의사, 간호사	성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의 진료 주 1회 신고 서식 작성
검사실	검사담당자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감염병 담당부서	감염병 전담요원	표본감시 결과보고 자료분석 및 의료기관 환류

○ 담당자 역할

- 표본감시기관 추천 및 관리
 - 표본감시기관 관리대장 작성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 표본감시기관 분기별 신고현황 분석 등
 - 표본감시 자료수집 : 주 단위로 신고자료 수집
 - 시·도 보고 : 매주 화요일, 감염병 웹보고(<http://is.kdca.go.kr>) 이용
 - 표본감시 결과분석 및 환류
 - 분석 및 환류 주기 : 주 1회
 - 환류대상 : 진료실, 관내 표본감시기관 등
 - 분석내용 : 질환별 환자수(성별, 연령별)
 - 환류방법 : 감염병 웹통계, 주간 건강과 질병(PHWR)
 - 표본감시 자료분석 및 결과환류
 - 분석내용 : 시·군·구별 성매개감염병 환자수(성별, 연령별)
 - 분석방법 : 감염병 웹통계 자료 이용
 - 환류주기 및 대상 : 주 1회, 표본감시기관 등
- ※ 기타 세부사항은 「2018년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안내」에 따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④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나 한의사

※ 신고건이 0인 의료기관은 제로보고서로 제출

나. 특수 취약지역기반 감시체계

1) 사업대상

- 대상자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유흥접객원 등)
- 대상질환 : STI(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및 HIV

2) 참여기관 : 전국 1개 보건소

○ 서울(1) : 성북구

※ 시·도지사는 감시체계 운영 해지 사유가 발생할 시 질병관리청장(에이즈관리과)에게 보고

3) 보고체계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상·하반기 종료 후 익월 7일까지 보고(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실적보고서 및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실적보고서로 통합 보고)



다. 기타

1) 아동⁷⁾ 성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임질, 성기단순포진, 침균콘딜롬) 발생 시, 아동학대 의심 및 신고 조치

○ 성매개감염병 확진 시, 아동학대⁸⁾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판단하여 의심이 되는 경우 112,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V.부록 8, 86p 참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아동 성매개감염병 확진을 위한 검사는 특이도가 높은 검사법을 사용하며, 필요 시 재검사를 통해 위양성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함

7)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8)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3 진단·신고 기준⁹⁾

가. 매독(Syphilis)

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1기 매독, 2기 매독, 선천성 매독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만 신고대상이며, 의사환자는 신고대상 아님

② 임상증상

- 1기 매독: 경성하감(chancere)이 특징적 병변으로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없는 구진이나 궤양이 발생하여 2주 내지 6주 후에 자연 소실됨
- 2기 매독
 - 감염 6주 내지 6개월 후에 발생함
 -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반점, 구진, 농포성 매독진, 편평콘딜롬), 림프절 종대 등을 보임
- 선천성 매독
 - 대개 임신 4개월 후에 감염이 발생함
 - 조기 선천성 매독: 생후 2년 내에 발병하며, 성인의 2기 매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후기 선천성 매독: 생후 2년 후에 발병하며 Hutchinson 치아, 간질성 결막염, 군도 정강이(saber shins) 등을 보임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1기·2기 매독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T. pallidum*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양성

9)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2020.9.14.[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지침]

- 검체(경성하갑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선천성 매독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림프절, 제대혈)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T. pallidum*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검사 양성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림프절, 제대혈)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나. 임질(Gonorrhea)

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질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② 임상증상

- 남성: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 시 통증, 요도구 발적 등)
- 여성: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뇨 시 통증, 질 분비물 증가, 비정상적 월경출혈, 항문직장 불편감 등)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남성의 요도도말)에서 세포 내 그람음성 쌍알균 현미경 검사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결막, 혈액, 관절액)에서 *N. gonorrhoeae* 분리 동정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첫 소변, 척수액, 관절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자궁경부·질도말, 첫 소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다. 클라미디아감염증(Chlamydial infections)

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만 신고대상이며, 의사환자는 신고대상 아님

② 임상증상

- 임균 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lymphogranuloma venereum):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 수직감염에 의한 신생아 결막염, 영아 폐렴 등이 나타남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에서 *C. trachomatis* 분리 동정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첫 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질도말, 첫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라. 연성하감(Chancroid)

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연성하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만 신고대상이며, 의사환자는 신고대상 아님

② 임상증상

- 성기 궤양
 - 붉은 구진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농포로 진행한 후 농포가 터져 통증성 궤양을 형성하는데, 전형적인 궤양은 지름 1cm~2cm로 경계가 뚜렷함
 - 남성의 경우 음경의 포피, 음경귀두관, 음경 등에, 여성의 경우 음순, 질입구, 항문주위 등에 주로 궤양이 분포함

○ 부보(buboes)

- 서해부 림프절염은 남성 환자의 1/3, 여성 환자는 그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침범된 림프절이 액화과정을 거쳐 부보로 진행되고 저절로 터져서 농이 흘러나옴
- 성기궤양이 나타난 후 1주 내지 2주일이 지나 발생하며 종종 심한 통증을 동반함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병변의 분비물, 궤양부위 삼출물)에서 *H. ducreyi* 분리 동정
- 검체(병변의 분비물, 궤양부위 삼출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마.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성기단순포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성기단순포진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② 임상증상

- 초기감염: 성기부위에 수포형성 후 궤양을 형성(2주 내지 3주 내로 자연치유)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잠복감염: 초기감염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면서, 평생 동안 잠복감염을 유발함
- 재발성 감염: 신경절에 잠복하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분비함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말)에서 Herpes simplex virus type II 분리
- 검체(혈액,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말)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액,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 도말)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바. 침균콘딜롬(*Condyloma acuminata*)

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침균콘딜롬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침균콘딜롬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② 임상증상

- 성기 또는 항문 주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융기된 병변이 특징적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병변조직, 자궁경부세포)에서 Human papillomavirus 감염에 합당한 조직·병리학적 변화 확인
- 검체(병변조직, 자궁경부세포)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병원체보유자
 - 세포진 검사 결과 비정상($\geq$ ASCUS)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세포진 검사 결과 상관없이 HPV 특이 유전형 16, 18이 확인된 사람

② 임상증상

- 해당없음

③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자궁경부 또는 성기 부위의 병변조직이나 도말물)에서 HPV 특이 유전형 검출
 - HPV 특이 유전형 : 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8
 - ※ HPV 특이 유전형에 대한 기준은 IARC 분류 기준(Group 1, Group 2A)에 근거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Ⅲ

성매개감염병 관리

1.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2. 치료 지원
3.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4. 교육 및 홍보
5. 실적 보고

1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결과서¹⁰⁾ 발급

가. 대상별 건강진단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①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대 상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검진 및 관리기관

- 검진 :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보건소 등) 및 일반 의료기관
- 관리기관 :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보건소 등)

○ 진단항목 및 주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820호, 2021.7.19.) 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

10) 건강진단결과서: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의 항목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사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치 료

-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성매개감염병 전담 진료기관 (보건소 등)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조치
- 감염인의 비밀유지 및 인권 보호
-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격려
-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에서의 치료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체 확보 예산을 활용하여 치료

② 수시건강진단대상자

○ 대 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의 대상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등

○ 치 료 : 정기건강진단대상자와 동일

2) 일반관리대상자

① 대 상

- 임신부 : 임신부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태아감염 예방

※ 각급 혈액원의 공혈자 중에서 혈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봉합엽서에 동 내용을 기재, 통보하여 성매개감염병 검진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고 감염인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② 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등

③ 진단항목

- 매독혈청 검사
 -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신부(임신 3~4개월)의 혈액을 채취하여 매독의 감염여부를 판정하며, 판정 시 문진 및 임상증상 고려

④ 치 료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조치
- 성매개감염병 감염인에 대한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
-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격려
- 매독 감염인의 배우자에 대한 매독검사 권유 및 실시

3) 검진 희망자

① 대 상

- 전 국민

② 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등

③ 검진방법 및 치료

- 실명 또는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익명검사 가능(단, 익명검사는 보건소만 가능하며, 감염 시 완치 가능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반드시 사전교육)

※ 익명검사 방법 및 절차는 「HIV익명검사 가이드라인」(V. 부록 7, 84p)에 준하여 실시

-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보건소 등) 및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고위험대상자(건강진단대상자 등), 노인건강진단사업대상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및 치료 제공 가능
 -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자가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희망할 경우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의하여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때 검진 및 감염인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함
-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발행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중 「노인 건강진단」 참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1) 대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정기건강진단대상자 및 수시건강진단대상자)
- 2) 발급기관
 - 보건소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병·의원 포함)
-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서식
 - 건강진단결과서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건강진단기관명, 전화번호, 피검자 인적사항, 건강진단일 등의 항목을 기입
 - 건강진단결과서 서식(예)을 참고하여, 각 기관 실정에 따라 기관자체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

※ 건강진단결과서 서식(예)

건강진단결과서			
일련번호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본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따릅니다.

면허번호 : 진단의사 :

발급일 : 년 월 일

기관명 :

○○○시 ○○○구 ○○○동 ○○○번지
○○○) ○○○-○○○○ http://www.○○○.go.kr

검진 항목 및 결과				
판정일	년월일			
진단항목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참규곤달롬				
연성하감				
HIV				

비고	예시) 다음 내원일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월 일입니다.
----	---

- 규격 : A4용지를 1/2로 나누어 가로로 이용
- 각 기관 실정에 따라 위 서식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음
- 건강진단결과서 이면은 건강진단항목 및 회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지면으로 적극 활용

4)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조치사항

① 검진의무

- 건강진단수첩제 폐지(1999년 8월)로 인하여 검진의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주 및 검진 대상자에게 성매개감염병 검진 필요성을 알려 자발적·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교육·홍보 하도록 함

② 유관부서 협조

- 시·도 보건과 및 시·군·구 보건과는 검진의무 이행을 홍보하고 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위생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함

③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 각 시·도 보건과 및 시·군·구 보건소는 건강진단 실시기관이 반드시 피검자에게 소정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하도록 함

④ 비밀 유지

-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감염인 본인에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⑤ 업무 종사 제한

- 검진결과 감염인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않도록 교육함
 -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피할 때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음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9호)

⑥ 치료 관리

- 치료를 기피하거나 치료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치료 완료 시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보류

⑦ 배우자 치료

- 성매개감염병 감염인은 배우자도 동시에 치료받도록 유도하며, 감염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등에 의한 조치를 취함

⑧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확대 및 적용 주의

- 건강진단결과서 교부는 위생업무 지도·감독 수행 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아울러 건강진단 대상자들에게 선의의 불편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정확한 건강진단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검체 채취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편법적인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지양

5) 검진유보 및 제외대상

①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제외대상자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따른 대상자라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과 실제 무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검진을 제외할 수 있음

예) 유흥주점에서 단순히 식음료의 주문을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 판단기준: 관할 보건소장 및 검진 의사가 문진 등을 통해 판단

② 타법에 의하여 건강진단항목이 중복될 경우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같음
- 다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따라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에 따라 당해 건강진단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다음 재검진 일자를 명기하고 검진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일시 유보

2 치료 지원

가. 일반인

1) 의료급여

① 대 상

- 성매개감염병 감염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단,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제외)을 방문,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담률을 적용
- 1차 의료기관인 보건기관 외래진료 시 의료급여 환자는 무료 치료

② 진료지역 및 기관

- 진료지역 및 의료기관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됨

③ 진료기록 관리

- 진료기록부(V.부록 3, 79p)는 진료 담당의사가 진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상세히 기록 서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보존

④ 성매개감염병 감염인 진료비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부담은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액 지급,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구분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을 지급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개정 2021.4.21.)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및 보건 의료 원	외래	의약품 직접조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는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는 본인부담	
			그 밖의 외래치료	1,0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0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입원	-	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의 100분의90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은 본인부담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 전부	
	약국 및 한국희귀의 약품 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처방		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처방		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약국 직접조제		9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9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의약품 직접조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0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1,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는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는 본인부담		
		그 밖의 외래치료	1,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입원	-	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은 본인부담		
제3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의약품 직접조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5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는 본인부담		
		전산화단층촬영(C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는 본인부담			
		그 밖의 외래치료	2,000원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입원	-	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은 본인부담		

※ 근거 :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2021. 4. 21)

2) 건강보험

① 대 상

- 보건소 등 보건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② 진료지역

- 전국 의료기관

③ 성매개감염병 감염인 진료비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검진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절차, 자격, 검사 및 치료비 등은 일반질병과 동일

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1) 대 상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및 제5조 대상자

2) 진료기관

- 공공기관 :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 일반기관 :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 일반 의료기관

3) 성매개감염병 감염인 진료비

① 공공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

- 검진 및 치료비는 무료로 하며, 부족 예산은 시·도 및 시·군·구 자체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② 일반기관을 이용하였을 경우

-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
 -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시 의료급여대상자는 무료로 실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정된 성매개감염병 관리기관에 내소한 본인이 부담하되(단, 개인의 건강 등을 위한 예방 차원의 검진은 비급여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 내소한 본인이 부담), 시·도 및 시·군·구는 가능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일반 의료기관
 - 진료절차, 자격 등은 일반질병과 같으며, 검진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내소한 본인이 부담

3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가.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시 도	구 분	합 계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
계		265	256	1	8
서울		26	25	1	-
부산		16	16	-	-
대구		8	8	-	-
인천		12	10	-	2
광주		6	5	-	1
대전		5	5	-	-
울산		5	5	-	-
세종		1	1	-	-
경기		46	46	-	-
강원		18	18	-	-
충북		14	14	-	-
충남		16	16	-	-
전북		15	14	-	1
전남		22	22	-	-
경북		25	25	-	-
경남		23	20	-	3
제주		7	6	-	1

나.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1) 목적

- 성매개감염병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많은 특수 취약지역에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편의를 제공하고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를 도모하고자 함

2) 설치장소 및 시설규모

- 설치장소 : 성매개감염병 우려가 많은 유흥가 등 특수 취약지역
- 시설규모 : 검진 및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3) 설치 및 관리운영

- ① 시설임차 및 설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책임관리
- ② 전담기관 지정운영
 - 운영주체 : 보건소
 - 기술지도 : 보건환경연구원
 - 협조 :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
 - 주요업무
 -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 예방교육 및 홍보

4) 성매개감염병 전담자 배치 및 임무

- ① 공중보건의 활용
 - 공중보건의에게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에 관한 업무를 교육시켜 해당업무를 전담하도록 배치
 - 공중보건의를 배정받지 못한 시·도는 관할 시·군·구 성매개감염병 전문(담당) 의사 등을 활용
- ② 임무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
 - 성매개감염병 검진결과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완치 독려
 - 성매개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 질환에 관한 상담 또는 보건교육 실시

5) 기 타

-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책임 하에 정비·운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의 소재지, 임대차 재계약 등 변동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장(에이즈관리과)에게 보고

다.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

1) 목 적

- 성매개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개할 우려가 비교적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함

2) 근 거 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및 제7조

3) 기본방침

- 정기검진실시로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
- 검진 및 치료비 실비지원
- 보건소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교육, 검진, 치료 등 서비스 연계

4) 주요업무

- 성매개감염병 및 일반건강진단에 관한 진료
- 지역주민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사업 실적보고
※ 자세한 사항은 '5. 실적보고(42p)' 내용 참조

5) 지정 및 활용

① 지정 대상 및 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중에 다음 기준을 갖춘 병원을 성매개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활용

- 지정 설치 기준 : 검사 및 치료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구 분	지 정 기 준
1. 지정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가능한 비뇨기과,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을 지정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지정 제외)
2. 시 설	○ 검사실 : 9㎡ 이상 ○ 진료실 및 대기실 등
3. 장 비	○ 칸막이, 진찰대, 질경, 고압멸균기, 현미경, 배양기, 냉장고, 진탕기, 캔들자, 원심분리기, 천평, 염색대, pH메타기 등
4. 기 재	○ 백금이, 면봉, 삼각플라스크(30mℓ, 500mℓ, 1,000mℓ), 실린더(100mℓ), 파이펫(5mℓ, 10mℓ), 슬라이드글라스, 살레, 시험관 등
5. 인 력	○ 임상병리사 면허증소지자 확보
6. 주요임무	○ 성매개감염병 검진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관한 사항
7. 기 타	○ 그람염색 시약 일체

② 지정원칙

-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전담하는 것을 원칙
 -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선별 지정
 - 검진대상자의 적정수준과 지역간 균형을 유지
 - 지정기간은 각 시·도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며, 지정서 이면에 지정취소사유와 준수사항을 정하여 위반 시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지정
- ※ 현재 지정·운영 중인 의원급 진료소는 대용기간 완료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정

③ 지정취소

- 건강진단 검진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 미달
- 부정 진료 및 검사료 과다징수
- 검진대상자 이용 실적 저조 또는 운영 부실
- 실적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6)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성매개감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대상자 등에 대한 홍보·지도 사항
- 기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실시 시기

- 수시점검 : 필요 시
- 정기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 상·하반기 종료 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익월 7일까지** 보고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실적보고서)

7) 질병관리청 및 시·도의 업무지원

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시약 및 치료비 지원
- 교육자료 및 홍보물, 관리지침 등 배포

②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 진단시약비 및 치료비, 기자재 등 지원
- 건강진단 업무 및 검진에 관한 기술지도 및 치료비 지원
- 홍보물, 사업실적표 등 필요한 자료 및 서식 배포

4 교육 및 홍보

가. 목적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전달을 통해 자발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고자 함

나. 추진방향

- 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과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관할구역 내 중점 홍보 대상층을 파악하고 대상자에 따른 적합한 홍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별 실효성 있는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성매개감염병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전에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빠른 치유를 돕고 예후를 좋게 할 수 있음을 교육·홍보
- 또한, 고위험대상자 및 취약집단 등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시 민간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시·군·구 보건소의 성매개감염병 무료 검진과 치료혜택을 알려 이들 고위험·취약집단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접근성 향상과 치료지속을 도모

다. 추진내용

-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성매개감염병 감염경로, 증상, 치료법 등 교육·홍보
 - 보건소 등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익명검진 및 치료 홍보, 콘돔배포 등
- ※ 참고자료: 노인 대상 성매개감염병 예방 콘텐츠(교육자료)

5 실적보고

가. 사업관리 및 실적보고

- ① 시·도지사는 본 사업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달하여야 하며,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실적보고서 및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상·하반기 종료 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익월 7일까지 보고
※ 별도 보고양식에 작성·제출
- ② 건강진단을 실시한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며, 보건소장은 제출받은 실적과 당해 보건소의 실적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지정관리기관의 지도 및 점검결과 등 특이사항 보고는 별도 제출
- ③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사기록은 별도로 유지하여 검진실적 및 감염인 등을 파악가능 하도록 관리
- ④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을 위한 성매개감염병 검사시약 사용량 및 재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품 수급관리에 철저

나. 서식 및 작성요령

[illegible]

1) 서식의 위쪽

-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③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⑤ 수시건강진단대상자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대상자
- ⑥ 일반관리자
- ⑦ ①~⑥ 대상자를 제외한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 ⑧ ①~⑥ 대상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65세 미만 검진실시자
- ⑨ 65세 이상 노인 : 성매개감염병 검진자 중 65세 이상의 검진실시자

※ 대상을 검진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관계법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것

2) 서식의 왼쪽

기재 요령 : 각 항의 내용을 서식 위쪽의 대상별로 구분 기재

- ⑦ 소계 : ⑧~⑮의 수치합계를 기재
- ⑧~⑮ 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구콘딜롬, 기타의 [별표]에 의한 대상자별 진단항목 주기에 따라 실시한 건수를 기재
- ⑮ 소계 : ⑮~⑳의 수치합계를 기재
- ⑮~㉑ 반기 중 검사결과 성매개감염병의 병명에 따라 감염인 수를 해당란에 기재
- ㉑ 소계 : ㉑~㉓의 수치합계를 기재
- ㉑~㉓ 반기 중 치료한 성매개감염병 치료인 수를 병명에 따라 해당란에 기재
- ㉓~㉕ : 반기 중 교육·홍보에 투입된 예산 및 대상자별 교육·홍보, 간담회 횟수 등을 기재(시·도 또는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추진된 실적을 포함하여 기재)

성매개감염병 전담진료기관 실적보고서

20 년 반기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담당자: _____ 연락처: _____

[illegible]

1) 서식의 위쪽

- ① 기관명 :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및 지정관리기관의 명칭 기재
- ② 설치예산 :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의 설치 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로 구분하여 기재
- ③ 설치(지정)연도 : 설치된 연도, 지정관리기관의 경우 최초 지정연도를 기재
- ④ 의사전공 : 주 진료의사의 전공 기재
- ⑤~⑥ 운영예산 및 횟수 : 반기 동안 사용한 운영예산 및 월 운영된 횟수를 기재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만 기재
- ⑦ 평균 검진비용 : 1인 1회 검진항목의 총 소요비용(본인부담)
- ⑧~⑨ 검진 및 치료 항목 수 : 검사 및 치료 가능한 항목 수(HIV,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⑩~⑪ 실인원 및 연인원 : 1회 검진자 수의 반기 합계(중복제외) 및 1회 검진자수의 반기 합계
- ⑫ 1회 평균인원 : 1회 검진자 수의 반기 평균
- ⑬ 지정기준 적합여부 : 지정 설치기준(시설, 장비, 인력 등) 적합여부 반기평가

2) 서식의 왼쪽

기재요령 : 각 항의 내용을 서식 위쪽의 구분별로 기재

- ④ 소 계 : ⑤~⑦의 수치합계를 기재
- ⑧ 소 계 : ⑨~⑬의 수치합계를 기재
- ※ ⑤~⑦, ⑨~⑬ 시·군·구별, 시·도별 전담진료기관 수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IV

성매개감염병 실험실 검사

1. 매독
2. 임질
3. 클라미디아감염증
4. 연성하감
5. 성기단순포진
6. 침균콘딜롬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8. 기타
9. 검사 시 주의사항
10. 진단시약 및 기자재
11. 보건소 현지 확인 및 지도·감독

1 매독(Syphilis)

가. 정의

- 매독균(*Treponema pallidum*)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 질환

나. 임상적 특징

- ① 전파경로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으로 전파됨
- ② 잠복기 : 10일 내지 3개월, 평균 3주
- ③ 임상증상
 - 1기 매독 : 경성하감(chancre)이 특징적 병변으로,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없는 구진이나 궤양이 발생하여 2주 내지 6주 후에 자연소실 됨
 - 2기 매독
 - 감염 6주 내지 6개월 후에 발생함
 -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반점, 구진, 농포성 매독진, 편평콘딜롬), 림프절종대 등을 보임
 - 3기 매독
 - 고무종(gumma) : 피부, 뼈, 간 등을 침범함
 - 심혈관매독 : 주로 상행 대동맥을 침범함
 - 신경매독 : 무증상 매독, 뇌막혈관 매독, 척수로, 진행마비 등을 보임
 - 잠복매독 : 임상증상이 없는 시기
 - 조기 잠복매독 : 감염 후 1년 이내의 시기로 감염성이 높음
 - 후기 잠복매독 : 감염 후 1년이 지난 시기임
 - 선천성매독
 - 대개 임신 4개월 후에 감염이 발생함
 - 조기 선천성매독 : 생후 2년 내에 발병하며, 성인의 2기매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후기 선천성매독 : 생후 2년 후에 발병하며 Hutchinson 치아, 간질성 결막염, 군도 정강이(saber shins) 등을 보임

다. 검사방법

1) 검체

- 1기·2기 매독: 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혈액, 뇌척수액
- 선천성 매독: 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림프절 제대혈, 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검사법	검체	채취시기	채취용기	채취량	채취 후 보관온도
현미경 검사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태반, 제대, 림프절, 제대혈	의심 시	무균용기	적정량	실온
항체검출검사	혈액		혈청분리 용기	5mL 이상	4℃
	뇌척수액	신경매독 의심 시	무균용기	1mL 이상	
유전자 검출검사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태반, 제대, 림프절, 제대혈	의심 시	무균용기	적정량	
	혈액		항응고제 처리용기	5mL 이상	

2) 세부검사법 : 현미경검사, 항체검출검사(트레포네마검사, 비트레포네마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 * 자세한 사항은 「성매개감염진료지침」 및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1기·2기 매독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검사 양성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선천성 매독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림프절, 제대혈)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비트레포네마검사 양성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림프절, 제대혈)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마. 관련 조치 사항

- 혈청학적 진단법에 의한 양성의 경우 매독정량 검사치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치료받은 사람이 양성반응에 의해 다시 치료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치료 완료 6개월·12개월 후 임상 및 혈청검사 시행
- 매독 치유 여부는 비매독항원시험법(VDRL or RPR) 역가 감소 및 임상증세와 과거력 등에 기초하여 판정
- 치료 6개월 후 역가가 처음의 4분의 1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치료실패 의심
- 치유 또는 재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FTA-ABS 또는 EIA 검사로 IgM 항체가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임신부 매독 치료 시, 선천성매독을 예방하고 신생아의 예방적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조치
- 선별검사의 비트레포네마검사 및 트레포네마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질환단계에 따라 다르며 *T. pallidum*에 감염되면 추적검사가 필요함

2 임질(Gonorrhea)

가. 정의

- 임균(*Neisseria gonorrhoeae*) 감염에 의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의 성기 부위 질환

나. 임상적 특징

- ①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② 잠복기 : 2일 내지 7일
- ③ 임상증상
 - 남성 :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 시 통증, 요도구 발적 등)
 - 여성 :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뇨 시 통증, 질분비물 증가, 비정상적 월경출혈, 항문직장 불편감 등)
- ④ 합병증
 - 여성 : 자궁내막염, 난관염, 복막염, 바톨린선염, 불임 등
 - 남성 : 요도주위 농양, 부고환염, 불임 등
 - 임균혈증 : 관절염, 피부염, 심내막염, 수막염, 심근막염, 간염 등의 전신증상

다. 검사방법

- ① 검체 : 남성의 요도도말, 요도·자궁경부·질·직장·인두도말, 결막, 혈액, 관절액, 척수액, 첫 소변

검사법	검체 종류	채취시기	채취용기	채취량	채취 후 보관 온도
현미경검사	남성의 요도도말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수송배지	2개의 도말물	실온
배양검사	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중 택1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2개의 도말물	
	결막	필요 시	무균용기	적정량	
	혈액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5㎖ 이상	
	관절액			1㎖ 이상	
항원검출검사	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중 택1	증상 발생 1주일 이내	수송배지	2개의 도말물	
	첫 소변		무균용기	10㎖ 이상	
	척수액			1㎖ 이상	
	관절액			1㎖ 이상	
유전자검출검사	자궁경부·질 도말 중 택1			적정량	
	첫 소변			10㎖ 이상	

② 세부검사법 : 현미경검사(그람염색), 배양검사, 항원검출검사(ELISA 등), 유전자검출검사(PCR 등)

* 자세한 사항은 「성매개감염진료지침」 및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지침”에 위치) 참고

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남성의 요도도말)에서 세포 내 그람음성 쌍알균 현미경 검사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결막, 혈액, 관절액)에서 *N. gonorrhoeae* 분리 동정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첫 소변, 척수액, 관절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자궁경부·질도말, 첫 소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마. 관련 조치사항

- 임질로 판정된 경우 관리의사의 지도하에 성매개감염병 치료 표준처방전 또는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참조하여 이를 적절히 치료
- 분리임균의 확인 및 항생제 내성검사가 필요할 경우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N. gonorrhoeae*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는 다른 *Neisseria* 종에 대한 교차반응 때문에 위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핵산증폭검사 시 두 개의 다른 primer를 사용하여 확진하여야 함

3 클라미디아감염증(Chlamydial infections)

가. 정의

-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 감염에 의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의 성기부위 질환

나. 임상적 특징

- ①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② 잠복기 : 1주 내지 3주
- ③ 임상증상
 - 임균 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lymphogranuloma venereum) :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 수직감염에 의한 신생아 결막염, 영아 폐렴 등이 나타남
- ④ 합병증
 - 국소합병증
 - 남성 : 부고환염, 불임 등
 - 여성 : 점액농성 자궁경부염, 급성난관염, 바톨린선염, 간주위염(perihepatitis), 골반염증질환, 불임 등
 - 전신합병증 : Reiter씨 증후군(관절염, 결막염, 요도염)

다. 검사방법

- ① 검체 : 요도·자궁경부·직장·질·인두도말, 첫 소변 등
- ② 세부검사법 : 배양검사(분리동정), 항원검출검사(EIA, DFA 등), 유전자검출검사(PCR 등)

* 자세한 사항은 「성매개감염진료지침」 및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검사법	검체 종류	채취시기	채취용기	채취량	채취 후 보관 온도
배양검사	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의심 시	수송배지	2개의 도말물	4℃
항원검출검사	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수송배지	2개의 도말물	
	첫 소변		무균용기	10㎖ 이상	
유전자검출검사	첫 소변		수송배지	2개의 도말물	
	질도말				

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의 *C. trachomatis* 분리 동정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말, 첫 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질도말, 첫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마. 관련 조치사항

- 클라미디아감염증으로 진단된 경우 관리의사의 지도하에 다른 성매개감염병과의 중복감염 여부를 고려하여 성매개감염병 치료 표준처방전 또는 성매개감염 진료 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히 치료
- 핵산증폭검사를 이용하는 경우 치료 후 완치판정 검사는 위양성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3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음

4 연성하감(Chancroid)

가. 정의

- 헤모필루스 두크레이균(*Haemophilus ducreyi*) 감염에 의한 성기나 회음부의 통증성 궤양성 질환

나. 임상적 특징

- ①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② 잠복기 : 1일 내지 35일, 통상 4일 내지 10일
- ③ 임상증상
 - 성기궤양
 - 붉은 구진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농포로 진행한 후 농포가 터져 통증성 궤양을 형성하는데, 전형적인 궤양은 지름 1cm 내지 2cm로 경계가 뚜렷함
 - 남성의 경우 음경의 포피, 음경귀두관, 음경 등, 여성의 경우 음순, 질입구 항문 주위 등에 주로 궤양이 분포함
 - 부보(buboes)
 - 서혜부 림프절염은 남성 환자의 1/3, 여성환자는 그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침범된 림프절이 액화과정을 거쳐 부보로 진행되고 저절로 터져서 농이 흘러나옴
 - 성기궤양이 나타난 후 1주 내지 2주일이 지나서 발생하며 종종 심한 통증을 동반함

다. 검사방법

① 검체 : 병변의 분비물, 궤양부위 삼출물

검사법	검체 종류	채취시기	채취용기	채취량	채취 후 보관 온도
배양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병변의 분비물	의심 시 (궤양 확인 즉시)	수송배지*	적정량	4℃
	궤양부위 삼출물			적정량	

* Amies 또는 Thioglycollate Hemin - based 수송배지 사용

② 세부검사법 : 배양검사(선택배양, 확인동정), 유전자검출검사(PCR)

* 자세한 사항은 「성매개감염진료지침」 및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병변의 분비물, 궤양부위 삼출물)에서 *H. ducreyi* 분리 동정
- 검체(병변의 분비물, 궤양부위 삼출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5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가. 정의

- 제2형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II) 감염에 의한 성기부위의 수포성 질환

나. 임상적 특징

- ①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② 임상증상
 - 초기감염 : 성기 부위에 수포형성 후 궤양을 형성(2주에서 3주내로 자연치유) 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잠복감염 : 초기감염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면서 평생 동안 잠복감염을 유발함
 - 재발성 감염 : 신경절에 잠복하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분비함

다. 검사방법

- ① 검체 : 혈액, 수포나 궤양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도말

검사법	검체 종류	채취시기	채취용기	채취량	채취 후 보관 온도
배양검사	수포액 (삼출액)	병변 관찰 시	수송배지	주사기 흡인 또는 2개의 도말물	4℃
	궤양부위 분비물			2개의 도말물*	
	궤양부위도말		무균용기	적정량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혈액	증상 발생 즉시	혈청분리 용기 등	5mL 이상	
	수포액 (삼출액)	병변 관찰 시	수송배지	주사기 흡인 또는 2개의 도말물	
	궤양부위 분비물			2개의 도말물*	
	궤양부위도말		무균용기	적정량	

* Calcium Aluminate 면봉 사용은 제외

② 세부검사법 : 배양(선택배양, 확인동정), 항체검출검사(EIA 등), 유전자검출검사(PCR)

* 자세한 사항은 「성매개감염진료지침」 및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도말)에서 Herpes simplex virus type II 분리
- 검체(혈청,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도말)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혈청, 수포나 궤양 병변 등에서 나오는 분비물, 궤양부위도말)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마. 관련 조치사항

- 성기단순포진으로 진단된 경우 관리의사의 처방전을 참조하여 적절히 치료
- 신생아, 습진이 있거나 화상을 입은 소아, 면역저하자와 접촉금지
- 유전자 검출 검사 시 감별진단을 위해 gpG(Herpes simplex virus - 1), 38 (Varicella - zoster virus) 유전자 확인 필요

6 침규콘딜롬(Condyloma acuminata)

가. 정의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감염에 의한 성기 또는 항문 주변의 사마귀성 질환

나. 임상적 특징

- ①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② 잠 복 기 : 2개월 내지 3개월
- ③ 임상증상 : 내외음부, 회음부, 항문 주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기된 병변이 특징적임

다. 검사방법

- ① 검체 : 병변조직, 자궁경부세포

검사법	검체 종류	채취시기	채취용기	채취량	채취 후 보관 온도
유전자 검출검사	병변조직	병변 관찰 시	무균용기	적정량	4℃
	자궁경부세포		수송배지	2개의 도말물*	

* 채취용 솔을 상하 좌우 문지르고 360도 회전 3번하여 채취

- ② 세부검사법 : 조직검사, 유전자검출검사(PCR, DNA Microarray 등)

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병변조직, 자궁경부세포)에서 Human papillomavirus 감염에 합당한 조직·병리학적 변화 확인
- 검체(병변조직, 자궁경부세포)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마. 관련 조치사항

- 침규콘딜롬은 조기 발견 후 Imiquimod 등의 국소도포제, 냉동치료, 전기소작술,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한 치료가 가능
- 여성들은 정기적인 Pap smear 검사를 권장함

바. 예방

- 예방은 안전한 성생활 및 예방접종
- HPV 백신은 첫 성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접종이 권장됨. 임신부에서는 HPV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음
- 11~12세 여아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HPV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백신 접종시기는 9세부터 가능함
- 9~12세의 접종시기를 놓치거나 접종을 종료하지 못한 여아나 여성은 13~26세에 HPV 백신 접종이 권장됨
- 남성에서는 4가 또는 9가 HPV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백신 접종시기는 9세부터 가능하며, 11~12세 접종이 권장됨
- 9~12세의 접종시기를 놓치거나 접종을 종료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남성은 13~26세에 4가 또는 9가 HPV 백신 접종이 권장됨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가. 정의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감염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등의 생식기암을 유발하는 질환

나. 임상적 특징

- ① 전파경로 : 성접촉으로 전파됨
- ② 임상증상 :
 - HPV는 가장 흔한 성매개감염 중 하나로 감염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소멸됨
 -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전암병변, 음경암, 인후두암, 항문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병변 등을 일으킴
 - HPV 16, 18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며, HPV 6, 11은 생식기 사마귀 원인의 90%를 차지함
 - HPV 감염 후 자궁경부 전암병변을 거쳐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는데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림

다. 검사방법

- ① 검체 : 자궁경부세포 또는 성기부위의 병변조직이나 도말물
- ② 세부검사법 :
 - 검체 채취
 - 병변부위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여 냉동보관 또는 10% 포르말린 등의 고정액에 보관하였다가 검사에 사용

○ 검사법

- 조직검사, 세포질 검사에서 조직 병리학적 변화를 확인하거나 조직검체로부터 PCR 등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하여 원인 병원체 유전자를 검출

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자궁경부 또는 성기 부위의 병변조직이나 도말물)에서 HPV 특이 유전형 검출
- HPV 특이 유전형 : 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8
- ※ HPV 특이 유전형에 대한 기준은 IARC 분류 기준(Group 1, Group 2A)에 근거

마. 관련 조치사항

- HPV 감염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음
- 치료는 HPV-관련성 병변의 치료에 집중됨. 자궁경부, 질, 외음부 전암병변과 생식기 사마귀에 대한 치료법은 냉동치료(cryotherapy), 전기소작술(electrocautery), 레이저치료, 외과적 절제술, 국소도포제 등 병변의 제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

바. 예방

- 침규콘딜롬의 예방 및 예방접종과 동일함

8 기타(트리코모나스 질염)

가. 정의

- *Trichomonas vaginalis*라는 원충에 의하여 생김

나. 임상적 특징

- 남자들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대개 증상이 없으나 일부에서는 비임균성요도염이 생김
- 여자들에게서는 악취가 나는 황록색의 분비물과 외음부의 가려움증이 특징이지만, 일부에서는 증상이 미약하거나 아주 없는 경우도 있음
 - ※ 질염 : 질의 감염증은 보통 질의 분비물과 가려움 같은 증상을 나타내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음. 질분비물이 많아지는 가장 흔한 원인 세가지는 세균성 질증, 트리코모나스 질염, 칸디다 외음부 질염임

다. 검사방법

- 생리식염수 한두 방울에 질분비물을 섞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움직이고 있는 트리코모나스를 확인하면 됨

라. 관련 조치사항

① 표준처방 :

- Metronidazole 2g 1회 복용 또는
- Tinidazole 2g 1회 복용

② 대처처방 :

- Metronidazole 500mg 1회 2회 7일간 경구투여

※ 완치율은 90~95% 정도인데, 성파트너를 같이 치료하면 이보다 더 높일 수 있으며 완치될 때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함

9 검사 시 주의사항

- 성매개감염병 검사 시에는 실험복 및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며 주사기, 주사침은 찢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
-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위하여 채취한 가검물이나 검사 완료된 배지는 반드시 소각하거나 멸균처리

10 진단시약 및 기자재

-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위한 시약 및 기자재는 질병관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구입할 시약은 장비와의 호환성 및 동일 시·군·내 또는 타 시·도 간의 전배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

11 보건소 현지 확인 및 지도·감독

- 시·도에서는 보건소 등에 현지 출장을 통하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과 검진실적, 환자 및 정도관리 등 성매개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① 공중보건소의 전담 배치
 - 공중보건소의에게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에 관한 업무를 교육시켜 해당업무를 전담하도록 배치
 -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지 못한 시·도는 관할 시·군·구 성매개감염병 전문(담당) 의사 등에게 업무 부여
- ② 임무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

- 성매개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 질환에 관한 상담 또는 보건교육 실시
- 치료, 검사시약의 관리, 법규 해석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검사업무에 대한 정도관리(연 1회 실시)
 - 질병관리청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사능력 정도관리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시·군·구 보건소 검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정도관리

V

부록

1. 관련 법령
2.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연혁
3. 성매개감염병 진료기록부
4. 성매개감염병 신고 서식
5. 성매개감염병 치료 권고 지침
6.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료
7. HIV 익명검사 가이드라인
8.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9. 관련 부서 연락처

1 관련 법령

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 2021.7.19] [보건복지부령 제820호, 2021.7.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 포진 및 침균콘딜롬을 말한다. 〈개정 2011.1.3〉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제4조 삭제 〈2013.3.23〉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제8조 삭제 <2013.3.23>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	HIV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사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13] [보건복지부령 제823호, 2021. 8.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12.15> 1-4. <생략>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생략> 나. 매독(梅毒) 다-자. <생략>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어. <생략>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⑦ <이하생략>	제13조 삭제 <2019.11.22.>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16. 1. 7., 2016. 6. 30., 2019. 11. 22., 2020. 6. 4., 2020. 9. 11., 2020.12.30> 1-2. <생략> 3.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나.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13] [보건복지부령 제823호, 2021. 8. 13, 일부개정]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20. 3. 4.> ④ <이하생략>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개정 2010.1.18.>	다.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라.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 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20. 6. 4., 2020. 9. 11.> 1.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표본감시기관으로서 표본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 6. 4.>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 6. 4., 2021.5.24>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사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13] [보건복지부령 제823호, 2021. 8. 13, 일부개정]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20. 8. 11.>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1.3.9> 1-8. <생략>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2020. 9.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3호, 2020. 9. 14., 제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침균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8조(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이하 생략>

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0, 2021. 2.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4.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이하 생략> 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1) ~2) <생략>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이하 생략>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생략>

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타법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1] [총리령 제1715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이하생략>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3>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이하생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2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나. <생략>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이하 생략>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타법개정]	
제6조(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별표 1】〈개정 2018.1.3.〉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제6조 관련)	
1. 안마시술소	
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안마실이 5개 이상 설치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안마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10명 이하로 하고,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은 안마사 수의 2분의 1로 한다.	
2. 〈이하생략〉	

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생략>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14. <생략>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1.26>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이하생략>

2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연혁

- 1954년 「전염병예방법」 제정, 성병(제3종 전염병) 관리 시작
- 1962년 외국인 주둔지역 및 내국인 상대 윤락녀, 접객부 등 정기검진
- 1969년 「성병 검진규칙」 제정
- 1977년 의료보호기금 지원으로 성매개감염병 감염자 무료치료
- 1982년 의료보험 진료과목에 ‘성매개감염병’ 포함
- 1984년 「성병 검진규칙」 폐지
- 1984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정
- 1998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검사항목에서 HIV 삭제
- 1999년 성매개감염병감염자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
- 1999년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건강진단수첩제 폐지
- 2000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따라 제3군 전염병 성병 표본감시체계 구축
- 2002년 청소년 및 노인 대상 성매개감염병 교육·홍보사업 시작
-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2007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교육·검진 시작
- 2010년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등록관리제도 폐지
- 20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로마를 지정감염병으로 재분류
- 2010년 제3군 법정전염병 매독 전수감시체계로 변경
- 2011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발간
- 2013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개정·시행
- 2016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개정·발간
- 2017년 성매개감염병의 종류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포함
※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9호(시행 2017. 6. 23.)
-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매독, HPV감염증 4급 감염병으로 재분류
- 2021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시행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의 성별 차별 법령 정비

3 성매개감염병 진료기록부(예시)

No.

(전면)

성 명	성 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결혼관계 1.미혼 2.기혼	직업
거주지					발병년월일
주요증상 및 병력(폐니실린 기왕력 등)					
성매개감염병감염력 1. 없음 2. 있음 (회) 성매개감염병 종류() 감염시기()				감 염 원: 1. 배우자 2. 연인 3. 윤락여성 4. 그 외 비정기상대자 5. 기타()	
지난 1년간 윤락여성과의 성관계 1. 없음 2. 있음 (회) 콘돔사용: 1. 사용함 2. 사용안함 3. 모름				가장 최근의 성관계에서 콘돔사용 1. 사용함 2. 사용안함	
진단명 1.매독(임상_기) 2.임질 3.연성하감 4.클라미디아감염증 5.기타()					
가검물 : 1. 소변 2. 농 3. 분비물 4. 혈청 5. 기타					
☐ 도말 () :			☐ VDRL(정성, 정량) 검사 :		
☐ 배양검사 :			☐ RPR(정성, 정량) 검사 :		
☐ Oxidase test : 양성 · 음성			☐ TPHA 또는 TPPA검사 :		
☐ 당분해능검사 :			☐ FTA-ABS 검사 :		
☐ PPNG 검사 : 양성 · 음성			☐ HIV :		
☐ 클라미디아감염증 : 양성 · 음성			☐ 기타		
폐니실린 과민반응 검사소견					
1. 검사명 피부반응		2. 검사결과 양성, 음성		1. 검사명 결과반응 2. 검사결과 양성, 음성	
특기사항(약제부작용시의 처치등)				진료기관명 진료의사명	

일 자	경과처치 및 처방	환자 확인	의사 서명

4 성매개감염병 신고 서식(예시)

성매개감염병 신고서					
수 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					
표본감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발생현황 없음(제로보고) ☐		
성별	연령 (만 세)	진단일	질환명	환자구분	
☐ 남 ☐ 여			☐ 1기매독 ☐ 클라미디아감염증 ☐ 2기매독 ☐ 성기단순포진 ☐ 선천성매독 ☐ 침구콘딜롬 ☐ 임질 ☐ 연성하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특이 유전형 ☐ 16 ☐ 18 ☐ 31 ☐ 33 ☐ 35 ☐ 39 ☐ 45 ☐ 51 ☐ 52 ☐ 56 ☐ 58 ☐ 59 ☐ 68 검사키트명:	☐ 환자 ☐ 의사환자 ☐ 병력 불명
☐ 남 ☐ 여			☐ 1기매독 ☐ 클라미디아감염증 ☐ 2기매독 ☐ 성기단순포진 ☐ 선천성매독 ☐ 침구콘딜롬 ☐ 임질 ☐ 연성하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특이 유전형 ☐ 16 ☐ 18 ☐ 31 ☐ 33 ☐ 35 ☐ 39 ☐ 45 ☐ 51 ☐ 52 ☐ 56 ☐ 58 ☐ 59 ☐ 68 검사키트명:	☐ 환자 ☐ 의사환자 ☐ 병력 불명
표본감시기관명 :			신고일 : 년 월 일		
요양기관지정번호 :			표본감시기관장 :		
주 소 :			전화번호 : (- -)		
※ 유의사항 ○ 본 신고 대상이 아동*인 경우로서, 아동학대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면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7p, 다. 기타 참조) → 신고기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V. 부록 8, 86p 참조), 관할 경찰서 또는 112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작성요령 ① 동일인이 여러 질병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 개별간에 작성한 후 { }표시로 묶습니다. ② 컴퓨터 통신 이용 시에는 서명 (인)을 생략합니다.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검출된 모든 특이 유전형에 ☒ 로 표시합니다(위에서 명시된 13개 특이 유전형 외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④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검사한 키트명을 기입합니다.					

5 성매개감염병 치료 권고 지침

※ 자세한 사항은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지침’에 위치) 참고

가. 매독

병명	표준처방	대체처방(페니실린 과민반응자)
1기 매독, 2기 매독, 조기잠복기 (감염 1년이내)	○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1회 근육주사	○ Doxycycline 100mg 1일 2회 또는 200mg 1일 1회 경구 14일 요법
3기 매독, 후기잠복기 (감염 1년 이후), 기간불명의 잠복기	○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3주간 주 1회 근육주사	○ Doxycycline 100mg 1일 2회 또는 200mg 1 일 1회 28일 경구투여
신경계 매독	○ Penicillin G potassium crystal 1일 1,800~2400만 단위 (4시간마다 300~400만 단위) 18~21일 정맥주사 ※ 표준처방 이후 Benzathine Penicillin G 240 만 단위 3주간 주 1회 근육 주사 추가	○ Doxycycline 200mg 1일 2회 28일 경구투여 ○ Ceftriaxone 2g 1일 1회 10~14일 근육 또는 정맥주사 ※ 단, ceftriaxone도 교차 과민반응이 가능하므로 투약 전에 부반응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해야 한다.
임신부 매독	○ 병기에 따라 동일하게 Penicillin을 처방 ※ 1기, 2기, 조기 잠복기 매독의 경우 1주 후 Benzathine Penicillin G 240만 단위 근육 주사를 1회 추가 투여 권장	○ 탈감작 후 페니실린을 투여한다. ※ Doxycycline 임신부 사용금지
선천성 매독	○ Penicillin G potassium crystal 5만 단위/1kg 1일 2회(12시간마다) 7일 정맥 주사. 이후 동일 용량을 1일 3회 (8시간 마다) 3일 정맥 주사	○ 탈감작 후 페니실린을 투여한다.

※ 페니실린 정맥주사는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나. 임질

병 명	표준처방	대체처방(과민반응자)
생식기(자궁 경부, 요도), 직장 임질	○ Ceftriaxone 500mg 또는 1g 단회 근육주사(또는 정맥주사) + azithromycin 1g 단회 경구 투여	- Spectinomycin 2g 근육주사 단회요법 + Azithromycin 1g 단회 경구투여
인두 임질	○ Ceftriaxone 500mg 또는 1g 단회 근육주사(또는 정맥주사) + azithromycin 1g 단회 경구 투여	※ Spectinomycin은 효과적이지 않음

※ 약제 내성균 출현에 주의하여 내성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다. 클라미디아감염증

병 명	표준처방	대체처방
클라미디아 감염증	○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 ○ Doxycycline 100mg 1일 2회 7일 경구 투여 ※ 낮은 복약순응도가 예상되는 경우, Azithromycin 1g 1회 경구투여 권장	
임신부 클라미디아 감염증	○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 ○ Amoxicillin 500mg 1일 3회 7일 경구투여 또는 ○ Erythromycin 500mg 1일 4회 7일 경구 투여 ※ 임신부의 경우, 치료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라.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병 명	표준처방
연성하감	○ Azithromycin 1g 1회 경구 투여 또는 ○ Ceftriaxone 250mg 1회 근육 주사 또는 ○ Ciprofloxacin 500mg 1일 2회 3일 경구 투여(임신, 수유부 금기) 또는 ○ Erythromycin base 500mg 1일 3회 7일 경구 투여
성기단순포진 (최초발현)	○ Acyclovir 400mg 1일 3회 7~10일 경구 투여 또는 ○ Famciclovir 250mg 1일 3회 7~10일 경구 투여 또는 ○ Valacyclovir 1g 1일 2회 7~10일 경구 투여
성기단순포진 (재발성)	○ Valacyclovir 500mg 1일 2회 5일 경구 투여 또는 ○ Famciclovir 125mg 1일 2회 5일 경구 투여 또는 ○ Acyclovir 400mg 1일 3회 경구 5일 요법
첨규콘딜롬	○ Imiquimod 5% 크림 1일 1회 자기 전, 주 3회, 16주간 도포 또는 ○ 액체질소 냉동요법 1~2주에 1회 또는 ○ Podofilox/Podophyllin resin 0.5% 주 3회 도포 또는 ○ Bi- 또는 Trichloroacetic acid(BCA 또는 TCA) 80~90% 주 1회, 6~8주간 도포 ○ 외과적 절제, 전기소작술, CO2 레이저절제술

※ 본 내용은 성매개감염 진료지침(2016년)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처방 시 원자료 및 관련 전문서적 참고할 것

6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자료

〈표 1.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표본감시기관수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매개 감염병	563	587	587	581	588	571	586	580	586	593	586

* 2010년 12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 : 2001~2010년까지 보건소 및 시·군·구당 민간 2개소(인구 20만 미만인 시·군은 보건소만 지정)에서 2011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1개소의 보건소 및 1,2차 의료기관(인구 10만 미만인 시·군은 보건소만 지정)으로 지정기준 변경

〈표 2. 표본감시 성매개감염병 연도별 신고현황〉

단위 : 신고수(기관당신고수*)

구 분	계	매독 Syphilis	임질 Gonorrhea	클라미디아 Chlamydial infections	연성하감 Chancroid	성기탄생포진 Genital herpes	첨두콘딜로마 Condyloma acuminata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uman Papilloma virus infection
2010	7,422 (31.4)	-	1,816 (12.9)	2,984 (25.3)	0 (0.0)	1,572 (18.7)	1,050 (10.5)	-
2011	8,372 (31.8)	-	1,821 (11.1)	3,172 (19.9)	2 (1.0)	1,988 (18.1)	1,389 (12.0)	-
2012	9,213 (38.5)	-	1,612 (11.0)	3,488 (21.9)	0 (0.0)	2,618 (24.2)	1,495 (13.2)	-
2013	9,864 (41.4)	-	1,612 (10.7)	3,691 (23.4)	3 (1.0)	2,870 (26.3)	1,688 (15.1)	-
2014	11,401 (40.0)	-	1,699 (9.1)	3,955 (19.7)	0 (0.0)	3,550 (24.8)	2,197 (15.3)	-
2015	17,438 (50.1)	-	2,331 (9.4)	6,602 (26.8)	2 (1.0)	5,019 (26.6)	3,484 (18.0)	-
2016	22,957 (63.1)	-	3,615 (14.5)	8,438 (30.2)	0 (0.0)	6,702 (32.4)	4,202 (20.3)	-
2017	25,139 (70.2)	-	2,462 (9.5)	9,882 (33.8)	2 (2.0)	7,752 (37.4)	5,041 (23.1)	-
2018	28,737 (76.4)	-	2,362 (8.6)	10,609 (34.1)	5 (1.3)	10,359 (45.6)	5,402 (25.0)	-
2019	32,041 (82.4)	-	2,724 (9.3)	11,721 (35.8)	4 (1.0)	11,608 (52.1)	5,984 (26.7)	-
2020	38,057 (105.1)	330 (3.4)	2,199 (8.8)	8,960 (29.6)	0 (0.0)	10,759 (45.0)	4,864 (24.6)	10,945 (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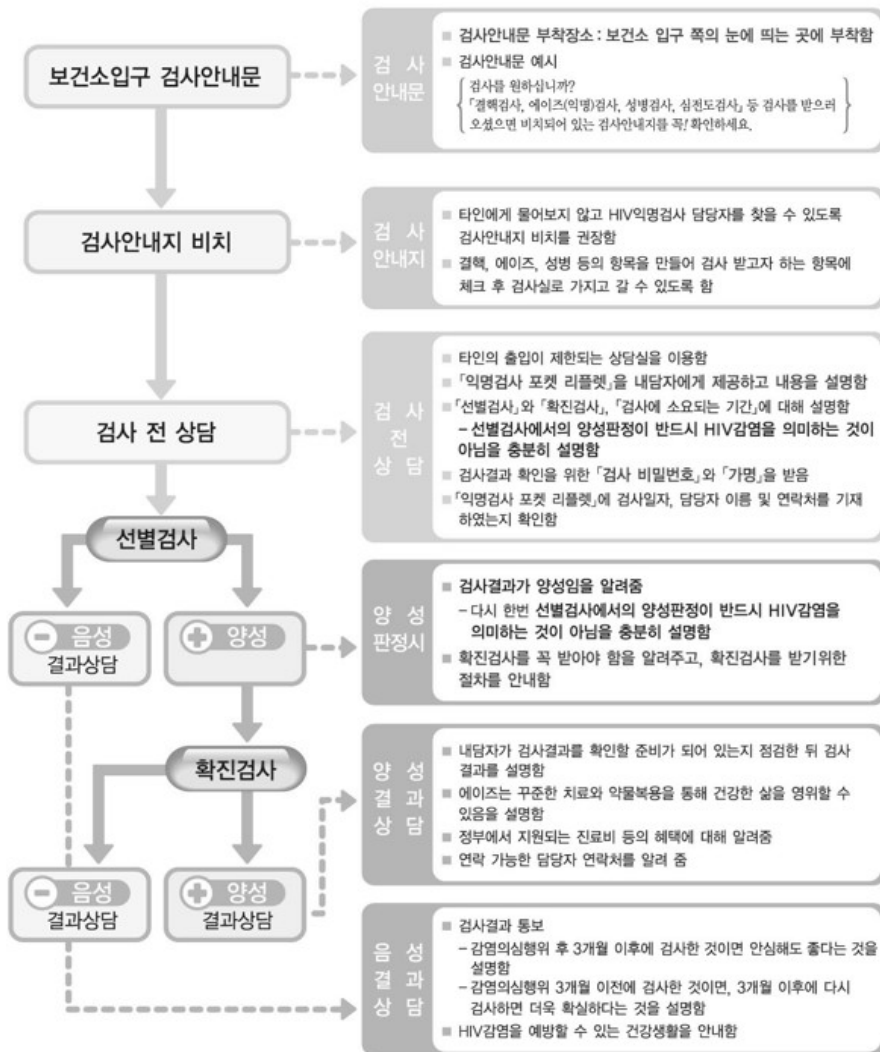
* 신고된 환자수를 한 번 이상 신고에 참여한 기관수로 나눈 값임

※ 출처 : 2021 감염병 감시연보

7 HIV 익명검사 가이드라인

-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검진)제4항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익명 검진(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익명검사를 활성화하여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 하도록 함
- 보건소 내 익명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익명검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 검사번호, 가명 등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등 검사의 비밀보장에 유의하여 실시함
- 최종 양성검사결과 통보 시에는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진료비 지원, 에이즈 센터 운영 등 국가의 감염인 지원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본인이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익명검사결과 감염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검사의뢰기관, 확인진단일, 검체번호, 성별 등을 신고·보고함(HASNet)

HIV 익명검사 가이드라인



“여러분의 따뜻하고 신중한 상담은 에이즈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 최신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아동복지기관현황 참고

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
중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19	02-558-1391
서울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노원아동복지관 3층	02-974-1391
서울	서울동남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3 4층(가락동)	02-474-1391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124(06362)	02-2040-4242
서울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신리로 69길106	02-2247-1391
서울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12 (가양동)	02-3665-5183~5
서울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4층 (응암동)	02-3157-1391
서울	서울영등포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0271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07299)	02-842-0094
서울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36 1층 (타운힐빌딩)	02-923-5440
서울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46 401호	02-422-1391
부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48742)	051-791-1360
부산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370-1 화명대림타운 상가4층 405, 406호	051-711-1391
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183	051-791-1391
부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506 영풍리젠시903호(48101)	051-715-1391
대구	대구광역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 (산격동)	053-710-1391
대구	대구광역시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319(송현동) 2층	053-623-1391

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
대구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02(동인동3가)	053-422-1391
인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04 4층 (간석동)	032-424-1391
인천	인천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99(주안동)(22134)	032-434-1391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호, 505호(계산동, 삼환1빌딩)(21050)	032-515-1391
인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53, 10층(아레메디칼센터)	032-563-0153
광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97-2(운암동)(61261)	062-675-1391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16	062-385-1391
대전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135 707호	042-716-2020
대전	대전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울로156	042-254-6790
울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23(우44709)	052-256-1391
울산	울산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21	052-245-9382
세종시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044-864-1393
경기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9계양빌딩 7층(안양동)	031-468-9821
경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36, 301호(백산프라자)	031-8042-7935
경기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여성행복센터 4층	031-523-3163
경기	경기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526 4층(14318)	02-897-1577
경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47 2층	031-8009-0080
경기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33동방평택복지타운 (소사동)	031-652-1391
경기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83(대야동 2층)	031-316-1391
경기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21 802-084호	031-275-6177

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
경기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35 402호 (월파동, 에스엘타운) (15288)	031-402-0442
경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20	031-245-2448
경기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96 4층(도림빌딩)	031-874-9100
경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06 2층 (태평동)	031-756-1391
경기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삼정프라자 7층	031-966-1391
경기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19(중동 1079-3) 골든타워 3층 302호(14534)	032-662-2580
경기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1334 4층 (봉담읍,송현빌딩)	031-227-1310
경기	경기남양주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다남빌딩 204호	031-592-9818
강원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25735)	033-535-5391
강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35	033-244-1391
강원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33 2층(교통, 반트스푸츠센터BD)	033-644-1391
강원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6(26482)	033-766-1391
충북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66-1 (율량동)	043-216-1391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18 2층	043-645-9078
충북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19(옥천읍)	043-731-3686
충남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상하천로24-1 3층	041-635-1106
충남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224(성정동)	041-578-2655
충남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55(취암동)	041-734-6640~1

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
충남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79번길 36, 601호	041-546-1391
전북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209 4층	063-734-1391
전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77	063-283-1391
전북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 문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12,4층(갈산동185-3)	063-852-1391
전북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41(향교동)	063-635-1391~3
전남	전남북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벽라1길41 2층	061-870-7200
전남	전남중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 3길 28, 4층(송월동)	061-332-1391
전남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061-753-5125
전남	전남서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061-285-1391
경북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	054-745-1391
경북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바람이길 94	054-853-1391
경북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12 3층 (대잠동)	054-284-1391
경북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 (송정동 29221 하나빌딩)	054-455-1391
경남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82층 (부원동)	055-322-1391
경남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무학로558(회원동)	055-244-1391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181번길6(상대동)	055-757-139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59(노형동)	064-712-1391~2
제주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8731 2층 (서귀동)	064-732-1391

9 관련 부서 연락처

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주소 및 연락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043) 719-7323/7917, FAX (043) 719-7339

나. 시·도 성매개감염병 담당자

시 도	부서명	전 화	Fax
서울	감염병관리과	02)2133-7684	02)2133-0727
부산	시민방역추진단	051)888-3322	051)888-3339
대구	감염병관리과	053)803-6102	053)803-6089
인천	감염병관리과	032)440-2744	032)440-8666
광주	감염병관리과	062)613-1176	062)613-1169
대전	감염병관리과	042)270-4023	042)270-4009
울산	시민건강과	052)229-3564	052)229-3519
세종	보건정책과	044)300-5727	044)300-5119
경기	질병정책과	031)8008-5433	031)8008-4179
강원	감염병관리과	033)249-2434	033)249-4099
충북	보건정책과	043)220-3144	043)220-3119
충남	보건정책과	041)635-4317	041)635-3062
전북	보건의료과	063)280-4679	063)280-2429
전남	건강증진과	061)286-6043	061)286-4779
경북	보건정책과	054)880-3808	053)880-3829
경남	생활방역추진단	055)211-4975	055)211-4969
제주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27	064)710-2919

2022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인 쇄 : 2021년 12월
발 행 : 2021년 12월
발 행 처 : 질병관리청
편 집 처 :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
전 화 : 043-719-7323/7917
팩 스 : 043-719-7339
주 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본 지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질병관리청에 귀속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838-741-8(93510)

(전자) 978-90-6838-742-5(95510)